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 비치 가능 명확화〉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5329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 비치 가능 명확화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 비치 가능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후단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 ③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이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선박보안을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6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부두회사 등)는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보안심사나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서는 항만시설 보안을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제12조의2¹⁾에 따라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증서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²⁾에도 현행 법령상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2)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등과 달리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³⁾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인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계획’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총 4개의 법률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법률 목록]

구분	소관부처	법률	유형
1	기재부	국세기본법	②대조·확인
2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보관·비치
3	금융위	담보부사채신탁법	①보관·비치 ②대조·확인
4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법	①보관·비치

※ 출처: 법제처

3)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별도로 출력하여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81.3%(의료 90.7%, 제조 83.8%, 공공 63.6%), 「2023 전자문서 이용실태조사」, KISA

4)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①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로 가능함을 명확화, ②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의 관계를 보면, 전자문서의 종이 문서로서의 효력을 이미 제4조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긴급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표] 관련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는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문서로의 갈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현장에서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418